

4. 주요 심의·협의 기구

□ 교수평의회

교수평의회는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여교수회 부회장,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에서 선출된 전남대학교 교수회 이사,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평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대학원·학과(부) 및 부속시설의 설치·폐지,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대학의 예산 및 결산, 총·학(원)장의 선출 방법, 대학의 시설 및 환경, 교권과 후생복지, 주요보직자(부총장, 대학원장, 처장)에 대한 임명동의, 총장, 교수평의회 의장, 재적 교수평의회 의원의 1/3 이상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교수회

교수회는 전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대의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주요 기능으로는 본회의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사업보고, 회장의 선출과 불신임, 총장임용 후보자 추천 및 임용 과정에서 대학구성원과의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한 경우, 대학 재정 및 회계 상의 심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경우 총장의 불신임에 대한 사항,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교수회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교학위원회

교학위원회는 위원장인 교무처장과 교무부처장, 교학기획부처장, 교무과장, 학사과장, 자율전공학부장과 각 대학의 부학장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교학업무에 관한 사항,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개편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인 글로벌대외협력처장과 국제협력부처장, 언어교육원장, 글로벌교육원장, 국제협력과장, 이 대학 교원 및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국외학술교류협정 체결·교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교학부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 사무국장, 학무본부장, 각 처·국의 주무과장, 변호사, 총장이 임명하는 법학 및 교육학 전공교원 각 1명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전남대학교 모든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정비와 규정의 해석을 심의한다.

□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조정처장과 사무국장, 행정본부장, 기획조정부처장, 평의원회 추천 1인과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발전계획과 연차별 운영계획, 중·장기 교육 및 연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시설 계획 및 환경조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용도 및 공간 조정, 대학평가에 관한 계획, 학술교류협정 기본계획 수립, 대학 주요 홍보에 관한 계획, 기타 기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학원장과 학(원)장, 처장, 본부장 및 이 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학과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입학 및 과정수료 인정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석·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원(일반·전문·특수) 간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는 20명의 평의원(교수회가 추천하는 교수 대표 9명,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가 추천하는 비정규 교수 대표 1명, 공무원노조 전남대지부가 추천하는 공무원 대표 3명, 대학노조 전남대지부가 추천하는 대학회계 직원 대표 1명,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 노조 전남대지회가 추천하는 조교 대표 2명,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대표 3명,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조정부처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교직원 대표위원 4명, 학생 대표위원 4명, 관련 전문가 위원 1명,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미래위원회

미래위원회는 위원장인 교학부총장과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12명 이내)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 발전방향 정립 및 정책 효율성 점검, 대학환경 변화와 고등 교육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대학 운영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대학의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

□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산학협력단장과 산학협력부단장, 연구부단장, 산학협력본부장, 기획조정부처장, 산학협력부장, 연구진흥부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산학협력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결산, 산학협력단 정관의 개정 및 폐지,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산학협력단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30명 이내)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그 밖의 생명윤리와 안전을 비롯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과 위원회 위원 및 연구자의 교육, 위원회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을 포함한 그 밖의 생명윤리와 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교무처장과 대학원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 글로벌대외협력처장, 학(원)장 및 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교원 신규채용, 교원의 재계약·상위직급 재계약·정년보장, 부총장·대학원장·학(원)장의 보직임용, 계약제 임용교원의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기준,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초빙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명예교수의 추대, 교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분야 및 대상자 적격여부,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기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13인 이내의 전임교원(전산관련 교원 1명 포함)과 외부위원(3명 이내)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대학입학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 기타 입시 부정방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심의한다.

□ 입학관리위원회

입학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입학본부장과 입학과장 및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 및 대학원의 (편)입학, 입학 전형 제도, 입학과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 대학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및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기타 입학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입학본부장과 처장, 국장, 본부장, 입학과장, 자율전공학부장, 창의융합학부장, 각 대학 부학장, 치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및 교육현장과 관련 있는 외부위원(장학관, 장학사, 타 대학 입학 관련 전문가 등)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 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대학입학(학·석사통합과정 포함)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 등)을 심의한다.

□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 7명과 일반직위원 8명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 사무국장, 학무본부장, 교수평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일반직위원은 재직 중인 교원과 직원 각 2명, 재학생 2명, 이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으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우리 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 학무회

학무회는 총장, 부총장, 학(원)장·처장, 국장, 본부장, 3단계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소프트웨어교육원장 및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대학·학과(부)·전공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 학칙 개정 및 규정의 제정·개정, 입학·수료·졸업 및 학사학위 수여 취소, 고사·시험, 학생지도·장학 및 후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 학술연구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인 연구처장과 연구부처장, 산학협력부처장, 산학연구부처장, 연구진흥과장, 연구행정과장,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학술 연구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본교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원해외파견연구지원사업, 연구년지원사업,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학술연구 사항을 심의한다.